

## 토론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후에도 그 의의가 국민들에게 뚜렷이 체감되지 않고 있음
  - 국민 10명 중 9명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디선가 유출,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0명중 8명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두잇서베이, 2012. 8. 29)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주민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평생 반복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지만(2011. SK컴즈 3천5백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로도 2012. 7. KT 8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정보주체의 피해에 대한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고(검찰, 넥슨 1천만 명 유출사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음(법원, 옥션 및 네이트 유출사고에 원고패소 판결). 그렇다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기란 불가능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주민번호를 바꿀 수도 없음(법원, 주민번호 변경소송 1, 2심에서 각하 판결)
  
- 거대 기업의 개인정보 기반 마케팅 전략의 확산으로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
  - 사실상 강제되는 동의
  - 회선사업자의 개인 통신내용의 감청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 논란. DPI의 위헌성을 ‘동의’로 회피하려는 시도. 2009년 국내 KT 쿡스마트웹 논란 외에도 영국, 미국, 브라질 등지에서 논쟁이 계속됨
  - 브뤼셀 선언 등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
  
- 차기정부 개인정보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과제
  - 개인정보보호법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관할로 유지됨.
  - 다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던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및 보안 관련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됨.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산된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적절하였는가를 평가해 보았을 때 부정적.
  
- \*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 이후 새로운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왜 존재감이 없는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권한/인사/예산상의 독립성과 충분한 전문성 및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사권한을 거의 행사하고 있지 않음(부처파견인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개인정보보

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능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여 사실상 독립적인 기구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지적함.

- \* 모든 민간/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가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치안·지방행정 등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일을 고유업무로 담당해 온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가,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정보 보호 업무로 확대해온 양상으로 국내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있어 법정주의가 시급한 과제

- 최근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범정부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 추진. 일단 정부가 주민번호의 사용허용을 전제로 한 프레임에서 사용금지를 전제로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프레임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
-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을 부추겼던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2012.8.23.) 이후로도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게임, 스마트폰 등에 새로운 본인확인제도 도입 시도. 주민번호 도용을 부추겨 실효성도 없고 정보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로 작용.
-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가 강제되는 상황. 공공과 민간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 개인정보DB에 기보 관되어 있는 주민번호가 삭제되지 않는 한 제도 취지가 살기 어려움.
- 또한 이동통신업, 신용정보업 등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요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으로 아예 폭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 가중. 이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행위는 적법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참여권은 충분히 행사되고 있는가?